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8월 2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8. 29) 상정
-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8. 2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배 덕 기)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 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운용함에 있어
-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고, 회계관직 변경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회계관직을 변경함에 있어 예산업무 담당과장을 총괄기금관리관으로 신설하고, 기금운용관을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에서 중소기업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에서 중소기업업무담당으로 함. (안 제6조)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운용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안 등을 심의함(안 제6조의2 내지 안제6조의5)
-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게 됨에 따라 폐지(안 제15조의 2 및 제15조의 3)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신청시 관공서나 금융기관의 업무상으로 용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기금관리 공무원의 직급하향 사유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 기금관리 공무원의 직급하향 사유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대출, 보증한도 초과 등으로 인하여 정책자금이라도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총괄기금관리관으로 지정되고, 행자부 등의 지침이 시달되어 변경하고자 함. ○ 관리상의 문제는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기금의 관리가 하향직급에서 관리되면,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기금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우려가 대두가 되고 있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 예산관리도 향후에는 지침 등이 폐지되어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상황이므로 기금도 자율적인 관리로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168호
의결 년월일	2003. 9. 3. (제106회)

제안년월일 : 2003. 9월 1일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 수정이유

- 기금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의 회계관직을 현행 회계관직으로 재조정하여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관리공무원에 예산업무담당과장을 총괄기금관리관으로,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 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것을 현행 조례와 같이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수정(안 제6조)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제3호중 “예산업무 담당과장을 총괄기금관리관으로, 중소기업 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 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를(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 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이 관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p> <p>1. 및 2. (생 략) 3.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관리공무원을 두되 <u>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u> 한다.</p>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p> <p>.....</p> <p>.....</p> <p>.....</p> <p>.....</p> <p>....</p> <p>1. 및 2. (현행과 같음) 3.....</p> <p>.....</p> <p>.....</p> <p><u>예산업무 담당과장을 총괄 기금관리관으로,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 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u></p>	<p>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1. 및 2 (개정안과 같음) 3(<u>현행과 같음</u>)</p>

[수정안 포함]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 설치)

-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④위원은 상공회의소법에의한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소기업대표,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 중소기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의3(위원회 개최)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안 등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4(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안
3.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보조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융자대상자 및 특례보증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5(일비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2호·동조제2항중 “시금고”를 각각 “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으로하고, 동조제3항중 “시금고의”를 “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과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시금고와 신청인”을 “시금고, 협약 금융기관 및 신청인”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목 “(보조금결정 및 교부)”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며”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교부 적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후 교부결정하며”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시금고의”를 “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과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시금고” 를 “용자받은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운용상황을 매월”을 “운용상황을, 협약 금융기관은 용자현황을 매월”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금고에”를 “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에”로, “시금고는”을 “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천시 중소기업자금지원신청서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1.대출신청개요

신청일자		접수번호	
신청금액		대출희망은행	
채권보전방법	신용,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기타()		
기지원된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 및 부천시중소기업자금지원 잔액	백만원		

2. 기업체 개요

업체명		성명	(실질경영주와의 관계:)		
소재지	본사: (전화:) 사업장: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설립일자		종업원수	상시:	임시:	
기업형태	법인, 개인, 기타	기업공개	상장, 등록, 기타		
표준산업분류번호		주거래은행			
공장등록여부	정상등록, 공장용도사용확인기업, 건축물용도가 제조업, 공장인 기업				
(재무상태) (단위:백만원)					
연도별	총자산	자기자본	이익잉여금	매출액	순손익
전전기					
전기					
당기					

3. 연혁

일 자	내 용

4. 주요 경영사항

※ 최근회사의 주요변동사항, 신제품개발, 자금사정, 자금신청동기, 애로사항 및 대책 등 기재

5. 주요주주 및 실질경영주

주요주주 (지분율30%이상)	성 명					
	지분율					
	실질경영주와의 관계					
실 질 경영주	성 명		직위		연령	
	근속년수	년	학력		동업계경력	년
	주요경력					

6. 사업장 및 실질경영주 소유 부동산 현황

구 분	종 별	면 적	시 가	소재지	관리침해여부
기업소유					
개인소유					
본사 또는 사업장 임차내용					

※ 관리침해여부 :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을 기재함
 면적 : 평 또는 m²로 기재, 시가 : 실제거래되는 가격

7.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품명(사업명)	전 기		당 기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국내판매						
수 출						
계						
판매조건	현금결제	%		외상결제	%	
	외상결제형태	어음: %(평균 일), 지연현금결제: %(평균 일)				
판매방법	모기업납품: %, 대량거래처납품 %, 대리점납품 % 시장판매: %, 수출판매: %, 기타판매: %					
제품특성						

8. 판매망 현황

구 분		시.군소재	9개도 소재	6대도시 소재	서울,수도권 소재	수도권 소재
직영 영업점수						
대 리 점 수						
주 요 판매처	업 체 명					
	전체매출액 대비구성비					

- 9개도 소재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6대도시 소재 :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 수도권 소재 : 서울, 경기, 인천권

9. 업종현황 및 시장여건

제품수명 주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향 후 전 망	매우양호, 양호, 현상유지, 사양확실
시장경쟁상태	
주요경쟁업체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시장진입장벽	
시장 점유율	

10. 기술력

○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종 류	고안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비 고

※ 종류란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구분 표시하고 출원중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표시

○ 규격표시 획득현황

종 류	승인품목	승인번호	승인기관	승인일자	비 고

※ 종류란에는 ISO,KT,NT,EM,100PPM 등을 기재

11. 재무분석

(단위:%, 백만원)

항 목		비율	계 산 근 기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총자산			
당 좌 비 율			(유동자산-재고자산)÷유동부채			
매출액경상이익율			경상이익÷매출액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전기총자산+당기총자산)÷2)			
현금이자보상배율			(당기순이익+감가상각비+지급이자및할인료)÷지급이자및할인료			
추 정 매출액	연도별	D + 1	D + 2	D + 3	D + 4	
	매출액					
	증가율					

12. 은행거래상황(법인 및 개인 포함)

연체,대지금 발생내용	구 분	발 생 일	해 제 일	금 액	비 고
불량정보 등록내용	구 분	발 생 일	해 제 일	금 액	비 고
부도발생 내 용	종 류	부도일자	사 유	금 액	처 분

※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시 미작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의2(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p> <p>④위원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업무담당 과장, 중소기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p> <p>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이 된다.</p> <p>제6조의3(위원회 개최) ①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결산안 등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신 설 ></p>	<p>제6조의4(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안 3.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보조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용자대상자 및 특례보증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신 설></p>	<p>제6조의5(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p>
<p>제8조(용자조건) ①용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입지자금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대출금리는 <u>시금고</u>의 일반대출금리 보다 낮게 하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 (생 략) <p>②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u>시금고</u>에 이차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제8조(용자조건) ①----- ----- ----- ----- ----- 1. (현행과 같음)</p> <p>2. ----<u>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u>----- ----- 3.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u>-----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u></p> <p><u>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인</u> <u>2. 대학교수 3인</u> <u>3. 부천시의회의원 2인</u> <u>4. 기업체 연구소장 2인</u> <u>5. 기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u> <p><u>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u></p> <p><u>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u></p> <p><u>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⑧위원회의 위원중 부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제15조의3(위원회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사업분야별 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u> <u>2. 보조금의 교부대상자 결정 및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 심의</u>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삭 제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u>사업운영 실적보고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심의</u></p> <p>4.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u></p> <p>제16조(보고) ① <u>시금고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금고에 기금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금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③ (생 략)</p>	<p>제16조(보고) ①----- <u>운용상황을, 협약 금융기관은 융자 현황을 매월-----.</u></p> <p>②-----<u>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에 -----</u></p> <p>-----<u>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은-----</u> -----.</p> <p>③ (현행과 같음)</p>

